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6 ~ 51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2016년 보육사업 안내」), 대법원판례 등에 부합되도록 보육교직원의 근무상한 연령 등의 세부사항을 개정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육대상 규정을 변경함(안 제4조)

(현행) 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12세 이하 저학년 보육

(변경)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

※ 「영유아보육법」 제27조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

나. 근무상한 연령을 삭제함(안 제14조)

(현행) 원장은 60세,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직원은 57세

(변경) 연령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

※ 「영유아보육법」에서 정년 등 연령에 관한 조항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음

※ 대법원판례 2007추134 : 법령 위임 없이 권리를 제한한 것은 헌법 제15조에서 보장 하는 직업의 자유 제한에 해당

다. 법제처 정비대상 및 규제개혁 대상 개정함(안 제9조 ~ 제11조)

○ 수탁자 의무 중 일부, 수탁자의 행위의 금지, 계약의 해지 조항 삭제함

※ 상위법령이나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는 다른 특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삭제, 위탁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조례에 명시한 내용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 제27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대법원판례 2007추134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6. 7. 18. ~ 8. 08.

(나) 예고결과: 의견있음(미반영)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 제출자	제출의견	검토의견	처리결과 (통보내용)
이승진 등 33명	안 제14조 근무상한 연령 삭제와 관련하여, 공무원 정년에 맞추어 60세로 개정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 법령인 「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 교직원 연령에 관한 조항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 하는 규정이 없음 - 대법원판례(2007추134)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원장과 교직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규제 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 없는 권리 제한으로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 제한에 해당되어 무효 - 따라서 입법예고와 같이 개정함이 타당함 	의견 미반영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보육대상) 어린이집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제7조제3항 중 “보육위원회”를 “거창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8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9조제4항·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하고, 제14조의2를 제11조로, 제15조를 제12조로, 제18조·제19조를 제13조·제14조로, 제21조·제22조를 제15조·제16조로 한다.

제11조(종전 제14조의2)제2항 중 “제14조제1항의 근무상한 연령 전에 임기”를 “임기”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보육대상)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보호하기가 어려운 가정의 아동으로 한다.</p> <p>1. 0세 ~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p> <p>2. 거창군 보육정책위원회 (이하 "보육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의한 12세 이하의 저학년 아동</p> <p>제7조(위탁운영) ① ~ ② (생략)</p> <p>③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수탁자의 보육 전문성과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u>보육위원회</u>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p> <p>④ (생략)</p> <p>제8조(위탁운영기간)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u>이 경우 재위탁 기간은 제14조의 원장 정년을 초과할 수 없다.</u></p> <p>제9조(수탁자의 의무)</p> <p>① ~ ③ (생략)</p> <p>④ 수탁자는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할 때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거창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p> <p>⑤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p> <p>⑥ (생략)</p>	<p>제4조(보육대상) 어린이집 이용대상은 <u>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u></p> <p>제7조(위탁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거창군 <u>보육정책위원회 (이하 "보육위원회"라 한다)</u>-----</p> <p>④ (현행과 같음)</p> <p>제8조(위탁운영기간) ----- ----- -----<후단 삭제></p> <p>제9조(수탁자의 의무)</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삭제></p> <p><삭제></p> <p>④ (현행 제6항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탁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 행위 3. 제3자에 대한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 권의 허용 4. 재산이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p><삭 제></p>
<p>제11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탁자가 관계법규 또는 제9조에서 정한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위탁운영 계약을 위반했을 때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보육 사업 수행이 곤란할 때 3. (삭제 2012.11.28)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영유아 보육상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p><삭 제></p>
<p>제12조(임면) (생략)</p>	<p>제10조(임면) (현행 제12조와 같음)</p>
<p>제14조(근무상한 연령) ① 공립 보육시설로서의 공익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육 교직원에 대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고, 보육교직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장 : 60세 2.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직원 : 57세 <p>② 제1항의 근무상한 연령이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된다.</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u>제14조의2(원장의 임기) ① (생략)</u> <u>② 제14조제1항의 근무상한 연령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원장으로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자(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에 한정한다)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u></p>	<p><u>제11조(원장의 임기) ① (생략)</u> <u>② 임기</u>----- ----- -----<u>사람</u>----- -----<u>사람</u>----- -----</p>
<p><u>제15조(전보) (생략)</u></p>	<p><u>제12조(전보) (현행 제15조와 같음)</u></p>
<p><u>제18조 ~ 제19조 (생략)</u></p>	<p><u>제13조 ~ 제14조 (현행 제18조제19조와 같음)</u></p>
<p><u>제21조 ~ 제22조 (생략)</u></p>	<p><u>제15조 ~ 제16조 (현행 제21조제22조와 같음)</u></p>